

대통령령 제 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제1호 중 “신고의 접수”를 “신고 수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② (생략)	제35조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.	③ ----- ----- -----
1.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<u>신고의 접수</u> 에 관한 사항	1. ----- ----- <u>신고 수리</u> ----- 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